

ERICA응원한대장학_자기개발분야 지급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장학금 지급 규정” 제16조(시행세칙 및 내규)에 의하여 ERICA응원한 대장학_자기개발분야(이하 ERICA응원한대장학)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RICA응원한대장학에 관하여 본교의 “장학금 지급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따른다.

제2장 장학 기준 및 원칙

제3조(장학 대상) ERICA응원한대장학 대상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 ① ERICA응원한대장학 신청자
-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1. 학술, 문화 및 예체능 분야의 공모전 또는 경연(경진)대회 참가 준비자
 2. 행정고시, 기술고시 1차 합격자 (고시반 입반자 제외)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1차 합격자 (개정 2023.01.27.)
 3. 글로벌 IC-PBL 프런티어 참가자
 4. 각종 자격증(기사 또는 기사에 준하는 자격) 취득 응시자
 5.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전국규모의 해외 연수과정 선발자 (신설 2022.12.19.)

제4조(장학 대상자 선발) ERICA응원한대장학 신청자에 한하여 학생지원팀에서 적격여부를 심의하여 선발한다.

제5조(장학 수혜 횟수) 개인별 장학 수혜 횟수는 제3조 2항 각 호별로 연간(학년도) 1회로 제한한다. 단, 각종 자격증(기사 또는 기사에 준하는 자격) 취득 응시자의 경우 학기별 1회로 한다.

제6조(장학 금액 및 자격 조건) 장학금 금액은 [표 1] ERICA응원한대장학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장학금 지급 및 수혜 제한

제7조(장학금 지급 절차 및 방법)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은 학생지원팀에서 생활비(계좌이체)로 지급한다.

제8조(수혜자격 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부적격자는 장학 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

- ① 징계 중인 자 또는 휴학생
- ② 그 외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자

제9조(장학 취소) 기 선발 처리된 장학생이 제8조의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수혜 장학금 환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9월부터 시행하며, [표 1] ERICA응원한대장학에 적용한다.

(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12월부터 시행하며, [표 1] ERICA응원한대장학에 적용한다.
(2022.12.19. 개정)

(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1월부터 시행하며, [표 1] ERICA응원한대장학에 적용한다.
(2023.01.27. 개정)

[표 1] ERICA응원한대장학

장학 대상	장학 금액
학술, 문화 및 예체능 분야의 공모전 또는 경연(경진)대회 참가 준비자	개인 최대 50만원 팀 최대 100만원
행정고시, 기술고시 1차 합격자 (고시반 입반자 제외)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1차 합격자	수업료 50%
글로벌 IC-PBL 프런티어 참가자	기초·차상위 100만원 1구간~3구간 80만원 4구간~8구간 50만원
각종 자격증(기사 또는 기사에 준하는 자격) 취득 응시자	기초~3구간 응시료 100%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전국규모의 해외 연수과정 선발자 (신설 2022.12.19.)	소득구간 및 외부지원금 고려 후 장학 금액 결정